

# 홈페이지 운영 규정

-개정 제84차이사회(2012. 7. 7) 의결

-개정 제107차이사회(2016. 1. 22) 의결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협회 홈페이지 및 회원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규정과 홈페이지 및 회원게시판을 운영할 운영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자 등)** ① 홈페이지 및 회원게시판의 운영을 위해 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운영자회의(이하 “운영자회의”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 운영자회의는 5인 이내의 운영자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운영자는 정보화위원장 및 윤리위원장이 협의, 추천하여 협회장이 임명한다.

④ 협회장은 운영자 중 1인을 운영자회의의 장으로 임명한다.

⑤ 협회장은 운영자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회원게시판 이용 기준)** 회원 가입을 한 자로서 회비납부 등 정관에 정한 의무를 다하여야 회원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회원게시판 이용자 준수사항)** ① 회원게시판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협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글
2. 이사회를 비롯한 협회의 공식 조직 및 기구의 권위와 의미를 근거 없이 폄하하는 글
3. 협회의 임·직원 및 회원에 대해 근거 없이 인격모독 또는 인신공격을 하는 글
4.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저급하고 자조적인 글
5.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사용케 하는 행위.
6.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7. 욕설, 비방 또는 음란, 폭력적인 내용의 표현을 하는 행위.
8. 과실 또는 고의로 허위의 정보를 공개 또는 유포하는 행위.
9.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2회 이상 반복적, 의도적으로 용량을 부풀려 게시하므로 타 회원의 이용을 견제하려는 행위
10.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11.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관련법령 및 이 규정을 포함하여 협회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

반하는 행위.

- ② 회원은 이 규정에 정하는 사항과 회원게시판 이용안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1.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의무를 가지며,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 2. 영리목적의 영업행위 및 사회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3. 게시물 또는 콘텐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4.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④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게시물 등의 관리)** ① 운영자는 게시물이 제4조 제1항의 각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운영자회의(유선 및 온라인 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을 거쳐 과반수 의견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자가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사전에 협회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통보하여 게시물을 따로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삭제된 게시물의 게시자는 전자서면으로 24시간내 운영자회의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회의는 10일 이내에 당해 게시물 삭제 건에 관하여 심의하여 운영자회의 과반수의 의견으로 게시물의 복구 등을 결정한다.

④ <삭 제>

**제6조 (회원게시판의 이용제한)** ① 운영자회의는 정관 제65조 규정에 의한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게시판 이용을 금지한다.

② 운영자회의는 정관 제66조제2항 규정에서 정한 기간의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게시판 이용을 금지한다.

③ 제5조 제1항과 관련하여 3개월 이내 3회 이상 제재를 받은 게시자에 대하여 운영자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별표1과 같이 게시판 이용을 제한 한다.

④ 각 시·도회장은 제재를 받은 게시자에게 각 시·도회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제한 한다.

⑤ 운영자회의는 건전한 홈페이지 및 회원게시판 운영을 방해하거나 운영자회의 업무수행에 심히 지장을 초래하는 자의 경우에는 협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공고문)** ① 홈페이지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공고문에 임의삭제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공고문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한 네티즌 윤리강령을 준용한다.

**부 칙(2008년 10월 01일)**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년 7월 9일)**

**제1조 (시행)** 이 개정 규정은 공포후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년 2월 5일)**

**제1조 (시행)**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원게시판 이용 제한 처분 기준[제6조제3항]**

처 분 기 준	처 분 내 용
1. 3개월 이내 3회 삭제 처분시	처분일로부터 3개월 회원게시판 이용 정지
2. 3회 게시판 이용 정지 처분시	회원게시판 이용 1년 정지

**【별표 2】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공고문[제7조제2항]**

1. 건전한 게시판문화와 통신문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글은  
임의삭제 됨을 알려드립니다.(비방 글, 유언비어, 비속어, 욕  
설 등 회원게시판 운영규정 제4조제1항 각호에 준한다고 판  
단되는 글.)
2.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반드시 실명과 전자우편을 기재하셔  
야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운영자회의

## 네티즌윤리강령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이버 공간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네티즌은 사이버 공간에서 유익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경  
험을 쌓는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정보사회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며,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사이버 공간의 주체는 네티즌이다. 네티즌은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  
으며, 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권리가 존중되지 않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사이버 공간은 무질서와 타락으로 붕  
괴되고 말 것이다.

이에 사이버 공간을 모두의 행복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네티  
즌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 네티즌 기본 정신 】

- ▶ 사이버 공간의 주체는 인간이다.
- ▶ 사이버 공간은 공동체의 공간이다.
- ▶ 사이버 공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열린 공간이다.
- ▶ 사이버 공간은 네티즌 스스로 건전하게 가꾸어 나간다.

### 【 행동 강령 】

1. 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2. 우리는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3. 우리는 불건전한 정보를 배격하며 유포하지 않는다.
4. 우리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5. 우리는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6. 우리는 실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ID로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
7. 우리는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8. 우리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9.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 감시와 비판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10. 우리는 네티즌 윤리강령 실천을 통해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한다.

<2000년 6월 15일 '네티즌 윤리강령' 선포식에서 발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각계인사의 참여로 만든 네티즌 윤리강령

<p style="text-align: center;"><b>현           행</b></p>	<p style="text-align: center;"><b>개           정   안</b></p>
<p style="text-align: center;"><u><b>홈페이지 운영 규정</b></u></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제84차이사회(2012. 7. 7) 의결</p> <p><b>제1조 (목적)</b> 본 규정은 협회 홈페이지 및 회원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규정과 홈페이지 및 회원게시판을 운영할 운영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 (운영자)</b> ① <u>홈페이지 및 회원게시판의 운영을 위해 7인 이내의 운영자를 둔다.</u></p> <p>② <u>운영자는 협회 정회원으로서 정보화위원장이 추천하여 협회장이 임명한다.</u></p> <p>③ <u>운영자는 협회 정관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 홈페이지 및 회원게시판 운영에 임한다.</u></p> <p>④ <u>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위원은 협회장의 승인을 거쳐 제3항에서의 운영자 역할을 할 수 있다.</u></p> <p>⑤ &lt; 신 설 &gt;</p>	<p style="text-align: center;"><u><b>홈페이지 운영 규정</b></u></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제84차이사회(2012. 7. 7.) 의결 -개정 제107차이사회(2016. 1. 22.) 의결</p> <p><b>제1조 (목적)</b> 본 규정은 협회 홈페이지 및 회원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규정과 홈페이지 및 회원게시판을 운영할 운영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 (운영자 등)</b> ① <u>홈페이지 및 회원게시판의 운영을 위해 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운영자회의(이하 “운영자회의”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u></p> <p>② <u>운영자회의는 5인 이내의 운영자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u></p> <p>③ <u>운영자는 정보화위원장 및 윤리위원장이 협의, 추천하여 협회장이 임명한다.</u></p> <p>④ <u>협회장은 운영자 중 1인을 운영자회의의 장으로 임명한다.</u></p> <p>⑤ <u>협회장은 운영자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지원을 할</u></p>

**제3조 (회원게시판 이용 기준)** 회원 가입을 한 자로서 회비납부 등 정관에 정한 의무를 다하여야 회원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회원게시판 이용자 준수사항)** ① 회원게시판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협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글
2. 이사회를 비롯한 협회의 공식 조직 및 기구의 권위와 의미를 근거 없이 폄하하는 글
3. 협회의 임·직원 및 회원에 대해 근거 없이 인격모독 또는 인신 공격을 하는 글
4.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저급하고 자조적인 글
5.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사용케 하는 행위.
6.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7. 욕설, 비방 또는 음란, 폭력적인 내용의 표현을 하는 행위.
8. 과실 또는 고의로 허위의 정보를 공개 또는 유포하는 행위.
9.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2회 이상 반복적, 의도적으로 용량을 부풀려 게시하므로 타 회원의 이용을 견제하려는 행위
10.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수 있다.

**제3조 (회원게시판 이용 기준)** 회원 가입을 한 자로서 회비납부 등 정관에 정한 의무를 다하여야 회원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회원게시판 이용자 준수사항)** ① 회원게시판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협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글
2. 이사회를 비롯한 협회의 공식 조직 및 기구의 권위와 의미를 근거 없이 폄하하는 글
3. 협회의 임·직원 및 회원에 대해 근거 없이 인격모독 또는 인신 공격을 하는 글
4.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저급하고 자조적인 글
5.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사용케 하는 행위.
6.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7. 욕설, 비방 또는 음란, 폭력적인 내용의 표현을 하는 행위.
8. 과실 또는 고의로 허위의 정보를 공개 또는 유포하는 행위.
9.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2회 이상 반복적, 의도적으로 용량을 부풀려 게시하므로 타 회원의 이용을 견제하려는 행위
10.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11.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관련법령 및 이 규정을 포함하여 협회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규정에 정하는 사항과 회원게시판 이용안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1.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의무를 가지며,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2. 영리목적의 영업행위 및 사회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게시물 또는 콘텐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4.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④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게시물 등의 관리)** ① 운영자는 게시물이 제4조 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삭제 경고 후 해당 게시물은 1시간 내 삭제 한다.

11.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관련법령 및 이 규정을 포함하여 협회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규정에 정하는 사항과 회원게시판 이용안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1.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의무를 가지며,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2. 영리목적의 영업행위 및 사회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게시물 또는 콘텐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4.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④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게시물 등의 관리)** ① 운영자는 게시물이 제4조 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운영자회의(유선 및 온라인 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을 거쳐 과반수 의견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자가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사전에 협회 홈페이지



③ 삭제된 게시물의 게시자는 서면으로 24시간내 정보화위원회(윤리위원이 삭제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 등은 10일 이내에 당해 게시물 삭제 건에 관하여 심의하여 운영자 과반수의 의견으로 게시물의 복구 등을 결정한다.

④ 운영자는 삭제한 글에 대해 정보위원회(윤리위원이 삭제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 (회원게시판의 이용제한)** ① 정보화위원회 및 윤리위원회는 정관 제65조 규정에 의한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게시판 이용을 금지한다.

② 정보화위원회는 정관 제66조제2항 규정에서 정한 기간의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게시판 이용을 금지한다.

③ 제5조 제1항과 관련하여 3개월 이내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게시자에 대하여 정보화위원회(윤리위원이 제재를 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별표1과 같이 게시판 이용을 제한 한다.

④ 각 시·도회장은 제재를 받은 게시자에게 각 시·도회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제한 한다.

⑤ 정보화위원장은 건전한 홈페이지 및 회원게시판 운영을 방해하거나 정보화위원회 업무수행에 심히 지장을 초래하는 자의 경우에는 협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할 수 있다.

지 운영자에게 통보하여 게시물을 따로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삭제된 게시물의 게시자는 전자서면으로 24시간내 운영자회의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회의는 10일 이내에 당해 게시물 삭제 건에 관하여 심의하여 운영자회의 과반수의 의견으로 게시물의 복구 등을 결정한다.

④ <삭 제>

**제6조 (회원게시판의 이용제한)** ① 운영자회의는 정관 제65조 규정에 의한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게시판 이용을 금지한다.

② 운영자회의는 정관 제66조제2항 규정에서 정한 기간의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게시판 이용을 금지한다.

③ 제5조 제1항과 관련하여 3개월 이내 3회 이상 제재를 받은 게시자에 대하여 운영자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별표1과 같이 게시판 이용을 제한 한다.

④ 각 시·도회장은 제재를 받은 게시자에게 각 시·도회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제한 한다.

⑤ 운영자회의는 건전한 홈페이지 및 회원게시판 운영을 방해하거나 운영자회의 업무수행에 심히 지장을 초래하는 자의 경우에는 협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공고문)** ① 홈페이지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공고문에 임의삭제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공고문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한 네티즌 윤리강령을 준용한다.

부 칙(2008년 10월 01일)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년 7월 9일)

**제1조 (시행)** 이 개정 규정은 공포후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7조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공고문)** ① 홈페이지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공고문에 임의삭제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공고문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한 네티즌 윤리강령을 준용한다.

부 칙(2008년 10월 01일)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년 7월 9일)

**제1조 (시행)** 이 개정 규정은 공포후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년 2월 5일)

**제1조 (시행)**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원게시판 이용 제한 처분 기준[제6조제1항]**

처분 기준	처분 내용
1. 3개월 이내 3회 삭제 처분시	처분일로부터 3개월 회원게시판 이용 정지
2. 3회 게시판 이용 정지 처분시	회원게시판 이용 1년 정지

**【별표 2】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공고문[제7조제2항]**

<p>1. 건전한 게시판문화와 통신문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글은 임의삭제 됨을 알려드립니다.(비방 글, 유언비어, 비속어, 욕설 등 회원게시판 운영규정 제4조제1항 각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글.)</p> <p>2.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반드시 실명과 전자우편을 기재하셔야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정보위원회</p>
---

네티즌윤리강령

**【별표 1】 회원게시판 이용 제한 처분 기준[제6조제3항]**

처분 기준	처분 내용
1. 3개월 이내 3회 삭제 처분시	처분일로부터 3개월 회원게시판 이용 정지
2. 3회 게시판 이용 정지 처분시	회원게시판 이용 1년 정지

**【별표 2】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공고문[제7조제2항]**

<p>1. 건전한 게시판문화와 통신문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글은 임의삭제 됨을 알려드립니다.(비방 글, 유언비어, 비속어, 욕설 등 회원게시판 운영규정 제4조제1항 각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글.)</p> <p>2.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반드시 실명과 전자우편을 기재하셔야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자회의</p>
---

네티즌윤리강령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이버 공간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네티즌은 사이버 공간에서 유익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정보사회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며,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사이버 공간의 주체는 네티즌이다. 네티즌은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권리가 존중되지 않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사이버 공간은 무질서와 타락으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이에 사이버 공간을 모두의 행복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네티즌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네티즌 기본 정신 】**

- ▶ 사이버 공간의 주체는 인간이다.
- ▶ 사이버 공간은 공동체의 공간이다.
- ▶ 사이버 공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열린 공간이다.
- ▶ 사이버 공간은 네티즌 스스로 건전하게 가꾸어 나간다.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이버 공간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네티즌은 사이버 공간에서 유익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정보사회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며,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사이버 공간의 주체는 네티즌이다. 네티즌은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권리가 존중되지 않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사이버 공간은 무질서와 타락으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이에 사이버 공간을 모두의 행복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네티즌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네티즌 기본 정신 】**

- ▶ 사이버 공간의 주체는 인간이다.
- ▶ 사이버 공간은 공동체의 공간이다.
- ▶ 사이버 공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열린 공간이다.
- ▶ 사이버 공간은 네티즌 스스로 건전하게 가꾸어 나간다.

【 행동 강령 】

1. 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2. 우리는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3. 우리는 불건전한 정보를 배격하며 유포하지 않는다.
4. 우리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5. 우리는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6. 우리는 실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ID로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
7. 우리는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8. 우리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9.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 감시와 비판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10. 우리는 네티즌 윤리강령 실천을 통해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한다.

<2000년 6월 15일 '네티즌 윤리강령' 선포식에서 발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각계인사의 참여로 만든 네티즌 윤리강령

【 행동 강령 】

1. 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2. 우리는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3. 우리는 불건전한 정보를 배격하며 유포하지 않는다.
4. 우리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5. 우리는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6. 우리는 실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ID로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
7. 우리는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8. 우리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9.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 감시와 비판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10. 우리는 네티즌 윤리강령 실천을 통해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한다.

<2000년 6월 15일 '네티즌 윤리강령' 선포식에서 발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각계인사의 참여로 만든 네티즌 윤리강령